자산운용사, 은행, 자문가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실무자에게 싱가포르의 국가자본은 무엇보다 거래상대방의 집합입니다. 자산운용사는 GIC와 테마섹으로부터 운용 위탁을 받으려 합니다. 은행은 테마섹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출하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합니다. 변호사와 자문가는 GIC와 테마섹의 해외 투자에 관여하는데, 이들 투자자는 해외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제재 규정, 규제 당국의 감시에 점점 더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의 지정학적 측면은 제K편 제V장에서 살펴봅니다.

세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GIC와 테마섹은 각기 별개의 법인으로, 거버넌스와 투자팀이 따로 있으며 공시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거래상대방은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을 구속한다거나, 어느 한쪽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스스로도 재무부나 내각이 개별 투자 결정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은 국가 소유가 곧 국가 보증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테마섹의 채무는 테마섹 자신의 채무입니다. 테마섹 포트폴리오 기업의 채권에도 정부 보증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개인 고객을 자문하는 전문가는 CPF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는 저축의 상당 부분을 CPF에 보유하며, CPF에는 인출, 수익자 지정(nomination), 주택 구입 사용에 관한 고유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민을 가는 고객에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CPF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제E편 제III장과 제E편 제IV장에서 다루는 싱가포르의 자산승계 설계에서 CPF 수익자 지정은 유언과 신탁의 범위 밖에서 작동하므로 이들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이 어느 국가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재무장관, GIC, 테마섹, 테마섹 포트폴리오 기업, 싱가포르 통화청(MAS)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해당 기관이 자기 계산으로 행동하는지(테마섹), 아니면 정부 자산의 운용자로 행동하는지(GIC) 확인합니다.
- 운용 위탁의 경우 싱가포르 내 거점과 현지 투자 인력 요건을 포함한 외부 위탁 기준을 검토합니다.
- 해외 거래의 경우 국가 기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투자 대상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산티아고 원칙에 따른 투자자의 자체 평가가 관련되는지 검토합니다.
- 국가의 지분 보유를 포트폴리오 기업의 채무에 대한 국가 보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고객의 경우 CPF 잔액, 수익자 지정, 주택 구입 사용 현황을 유언, 신탁, 지주 구조와 함께 정리합니다.
- 싱가포르를 떠나는 고객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시 CPF 잔액 인출에 관한 규칙을 확인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